

CISG하의 매수인의 계약위반 사례에 관한 고찰

하 강 현*

-
- I. 서언
 - II. 매수인의 의무 및 계약위반 유형
 - III. 매수인의 유형별 계약위반 사례
 - IV. 결론
-

I. 서언

UN이 국제물품 거래에서의 법적용상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매매당사자에게 통일된 준거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1980년에 제정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 CISG 또는 ‘국제물품매매법’으로 불려짐)이 발효(1988)된지도 15년이 지났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2004년 2월 17일자로 동 협약 가입서를 UN에 기탁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체약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즉, 체약한 타국가 상인과의 매매거래에 동 협약이 강제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2004년 10월말 현재 동 협약에는 63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이태리, 프랑스,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 등은 이미 가입해 있다. 다만, 일본과 영국은 아직 미

* 영산대학교 유통무역학부 조교수

가입 상태이다.

그 외에도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한국 등 계약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하는 경우, CISG가 간접 적용되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상인)도 국제물품매매시 발생하는 준거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불과 3개월 후부터 CISG에 강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역상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부의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는 CISG의 주요 내용을 우리 기업에 이해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CISG(이하 본 법이라 약칭함)와 관련하여 무역관계자가 시급히 이해해야 할 부분은 크게 계약성립편(제2편)과 물품매매편(제3편)이다. 동 협약이 적용된 다른 국가의 판례를 분석해 본 결과 물품매매편과 관련된 분쟁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이 계약성립편과 관련된 분쟁이다. 물품매매편 규정의 핵심은 양 당사자의 의무와 피해당사자에 대한 구제이다.

본자는 매도인의 의무위반 유형별 매수인의 구제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¹⁾한 데 이어, 본고에서는 매수인의 의무위반 유형별로 매도인의 구제사례를 분석, 제시하여 우리기업의 무역관련 분쟁을 예방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II. 매수인의 의무 및 계약위반 유형

1. 매수인의 의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성립과 함께 당해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한다. 일방 당사자는 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되고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그러한 불이행이 면책조항이나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하지 않는 한 이는 계약의 위반이 된다.

1) 참고, 「근본적 계약위반 조항의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매도인의 의무위반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19권(2003.2), pp.67-93.

매수인은 계약 및 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taking delivery)할 의무를 지닌다.²⁾ 본 법에서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계약 또는 어떠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그러한 조치와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

그러므로 국제지급거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 방식이나 추심 방식의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⁴⁾ 매수인의 주 의무는 크게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 등 두 가지이다.

이와 같은 의무를 매수인이 위반한다면 매도인은 계약의 위반에 대한 권리구제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 매수인의 계약위반 유형

(1) 대금지급의무의 위반

매수인이 만기일에 대금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 이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된다. 대금지급의 지체가 발생하면 본 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추가기간을 설정하여 최후한 후 매수인이 특정한 기간 내에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신용장개설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대금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행기전의 불이행선언에 상당하므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⁵⁾

(2) 신용장 개설의무의 위반

매수인의 대금지급 조치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신용장개설, 정부허가의 신청, 외화사용허가의 신청 등이 있으나⁶⁾ 위반사례는 신용장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매수인이 화환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2) 본 법 제53조.

3) 본 법 제54조 참조.

4)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500)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522)등을 매매계약서의 결제조건에서 준거법규로 채택하였다면 이 규칙에 의거 지급거래가 준거된다.

5) 본 법 제72조 참조.

6) 오원석·하강현, 국제물품매매법, 박영사, 2004, pp.190-191 참조.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 조치의무의 위반이 된다. 본 법 제54조에서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의무는 지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계약 또는 어떠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또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Hellner 교수는 신용장 개설실패의 경우 매수인은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한 것이며 매도인은 항시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이 중대한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⁷⁾ 그러나 Honnold 교수는 매수인이 신용장개설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최고통지를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여⁸⁾ 신용장 개설의 지체 또는 실패가 곧바로 중대한 계약위반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이견이 있다. 논자는 후자를 지지한다.

신용장 개설실패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계속 물품을 제조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은 이행정지권⁹⁾을 행사하여 먼저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한 후, 매수인이 계속 신용장 개설에 실패한다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물품수령의무의 위반

매수인은 계약과 본 법에 따라 인도된 물품을 수령할 의무를 진다. 본 법 제60조에서는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를 「매도인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 및 물품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도수령의무는 ① 인도수령의 예비적 행위, ② 실제로 물리적인 인도를 수령하는 행위 등 두 가지이다. 인도수령을 위한 예비적 행위는 매수인의 하역준비행위, 매수인 통관의무인 경우 수입승인 등도 포함된다. 매수인 운송수배의 경우라면 운송인 수배의무도 포함된다.¹⁰⁾ 이와 같이 인도수령의 예비적 행위는 포괄적으로 해석

7) J. Hellner, "The Vienna Convention and Standard Form Contracts",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arcevic P. Volken P. New Oceana, 1986, p.353 ; Kritzer, A.H.,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4, p.208.

8) Honnold, J.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2nd Edition, Kluwer Law & Taxation Publishers, 1991, p.440.

9) 본 법 제71조 참조.

10) FAS, FCA, FOB계약. 본 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매도인이 운송수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 매도인이 운송수배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되어야 하며 정형거래조건에의 의존도가 높다.¹¹⁾

인도수령의무는 선적지 또는 도착지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즉, 운송인에 의한 인도수령도 포함된다. 본 법 제31조에서는 인도의 장소를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선적지에서의 수령지체

선적지에서의 수령지체는 운송인에 의한 인수지연¹²⁾ 또는 선적지연¹³⁾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통상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추가기간을 설정하여 통지한 후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추가기간 중 발생한 손해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¹⁴⁾ 추가기간 중에도 매도인은 물품을 합리적으로 보존할 의무¹⁵⁾가 있다.¹⁶⁾

② 도착지에서의 수령지체

도착지에 물품이 도착하였으나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체선료의 발생¹⁷⁾, 보관료의 발생¹⁸⁾, 물품부패 등의 문제가 수반된다.

공산품의 경우라면, 통상 추가기간 설정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기간 중의 체선료, 보관료 등의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 Enderlein, Fritz & Maskow, *Dietrich, International Sales Law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ceana Publications, 1992, pp.232-233.

12) FCA계약.

13) FOB계약. 본선의 선적준비지연, 선복부족 또는 본선의 물품인수거절 등.

14) 본 법 및 Incoterms는 위험이전시기를 인도시기로 보는데 인도가 되지 않아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지는 않았지만, 본 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매수인이 인도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계약위반을 범한 때에는 그 위반시점에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15) 가령, 운송인이 물품의 수령을 지체한다고 하여 태풍이 부는 데도 물품을 부두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16) 본 법 제85조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매도인은 물품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사정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7) DES 계약.

18) DEQ, CIP, CPT 계약.

③ 물품수령의 거절

만일 불일치한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이 물품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물품의 불일치가 중대한 계약위반에 상당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중대한 계약위반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수령을 거절할 수는 없다.

매도인이 추가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그 지정된 기간중에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였다면, 이때에는 매도인의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④ PSI후 물품수령거절

선적지에서 매수인이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 PSI)후 물품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선적전 검사의 결과, 물품의 불일치가 발견되었고 매수인이 선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한 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선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불일치가 중대한 위반에 상당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선적전 검사의 결과, 물품의 불일치가 있어 매수인이 수령을 지체하거나, 정당하게 물품을 거절하는 것은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선적전 검사의 결과, 물품에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지에서 물품수령시 물품의 불일치가 있다는 이유로 물품수령을 거절할 수는 없다.

Ⅲ. 매수인의 유형별 계약위반 사례

1. 대금지급의무 위반 사례

(1) 위탁판매조건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이 위탁판매조건으로 구매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를 러시아 국제상사 중재법정의 판정을 통하여 살펴보겠다¹⁹⁾. 러시아 매도인은 멕

19) Russian Federation : Tribu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t the

시코의 매수인에게 1990년 12월 위탁판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하였다. 그 후 1991년 및 1993년에 추가 후속약정을 체결하여, 만일 인도한 물품이 2년 동안 판매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물품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대금을 할부지급토록 약정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러시아 국제상사중재법정은 물품수령 후 2년 동안 미판매된 물품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었고 이에 매수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매수인의 실질적 위반(material breach)이므로 매도인은 계약해제를 선언할 권리를 가지며 매수인은 물품대금 전액을 매도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와 같이 후속약정도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매매당사자의 의무에 속하게 된다.

(2) 물품 수요부족을 이유로 대금감액을 요구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시장수요의 부족을 이유로 대금의 감액을 요구한 사례를 러시아 국제상사 중재법정의 판정을 통하여 살펴보겠다. 러시아의 매도인과 독일의 매수인은 CIF조건으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²⁰⁾. 그러나 매수인은 시장수요의 부족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수입세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액을 요구하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러시아 국제상사 중재법정은 CIF계약에서 매수인이 수입세를 부담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시장에서의 수요부족은 대금감액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전액을 지급토록 명령하였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의 일반적 수요 변동은 대금감액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Russian Federati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rbitral award in case No.53/1988, 5 October 1988 : A/CN.9/ABSTRACTS/41, 25 July 2003, Case 468.

20) Russian Federation : Tribu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t the Russian Federati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rbitral award in case No.255/1944, 11 June 1997 : A/CN.9/SER.C/ABSTRACTS/41. 25 July 2003, Case 464.

(3) 선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이 선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익의 상실분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오스트리아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겠다²¹⁾. 독일의 매도인(원고)은 오스트리아의 2명의 매수인(피고)과 보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에는 매수인이 구매 물품대금을 선지급 하여야함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매도인은 세 번에 걸쳐 이를 상기시켰고 마침내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위한 추가기간을 설정해 주었으나, 매수인은 물품인도 후 대금지급토록 합의하였다며 선지급을 거절하였다. 하지만 매수인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의하여 이익의 상실이 발생하였다며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독일법원(항소법원 및 대법원 판결도 동일함)은 선지급조건을 위반한 것도 매수인의 계약위반이므로 매수인은 본 법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이익상실분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매수인이 선지급 또는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록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의 이익상실분은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운송 중 물품손상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운송 중 매매물품이 손상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지 독일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겠다²²⁾. 독일의 매수인(피고 : 독일 Pizzeria)은 이태리의 매도인(피자상자 제조업자)에게 피자상자 90묶음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1998년 7월 상자가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은 그 상자가 운송 중 손상되었음을 알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 매도인이 손상분 금액을 차감해 주지 아니하자, 매수인은 1998년 10월에 손상 없이 수령한 상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7월 손상분 차감은 당사자간에 확립된 판례이고 또한 물품인도장소는 Duisburg이므로 물품손상에 대한 위험은 매도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독일법원은 매수인에게 10월분 대금 및 이자를 매도인에게

21) Austria : Oberster Gerichtshof, 1 Ob 292/99v, 28 April 2000 : A/CN.9/SER.C/-ABSTRACTS/37, 27 May 2003, Case 427.

22) Germany : Amtsgericht Duisburg ; 49 C 501/00, 13 April 2000 :A/CN.9/SER.C/-ABSTRACTS/33, 19 December 2000, Case 360.

지급토록 명령하였다. 이전의 두 차례 손상분 차감이 본 법 제9조 1항에 규정된 당사자간의 확립된 관례라 보기 어렵고 또한 물품인도장소가 Duisburg라는 증거를 매수인이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법 제67조 1항에 의거 물품에 대한 위험은 운송인에게 전달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인도 장소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험이전의 시기는 본 법상의 위험이전 조항이 적용 된다²³⁾.

(5) 사기적 진술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사기적 진술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독일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겠다²⁴⁾. 중국의 매도인(원고 ; 회전판 제조업자)은 독점판매협정하에 독일의 매수인(피고)에게 회전판(circuit board)을 할부 인도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물품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고 또한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다고 사기적 진술을 하여, 양 당사자는 당해 물품의 가격을 제로화한다는 의미의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매수인은 물품가격의 약 3/5수준으로 시장에서 판매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하였다. 독일법원은 매도인의 청구를 인정하였고 물품가격을 제로화한다는 합의는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사기적 진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협의를 이끌어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6) 송장 미수령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송장을 매수인에게 발송치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독일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겠다²⁵⁾. 이태리의 매도인(원고)은 독일의 매수인(피고)와 가죽제품의 연속인도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그 중 두 할부인도분은 송장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물품에 하자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

23) 본 건에서는 정형거래조건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법에서는 제66조-제70조에 걸쳐 위험이전과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24) Germany : Oberlandesgericht Jena ; 8 U 1667/97 (266), 26 May 1998 :A/CN.9/-SER.C/ABSTRACTS/26, 3 December 1999, Case280.

25) Germany : Oberlandesgericht München ; 7 U 2070/97, 9 July 1997 :A/CN.9/-SER.C/ABSTRACTS/26. 3 December 1999, Case 273.

다. 이전분 대금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수표도 부도처리 되었다.

독일법원(항소법원도 동일한 판결)은 매수인이 송장을 수령치 못한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부도처리된 수표로 의하여 발생한 비용도 매도인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비록 매수인이 송장을 수령치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매도인으로부터 다른 수단으로도 대금지급을 요구받으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7) 물품의 지연인도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물품의 인도일자를 확정하지 아니한 할부인도계약에서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지연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스위스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겠다²⁶⁾. 이태리의 매도인(원고)은 스위스의 매수인(피고)과 불도저 할부인도 계약을 체결하고 불도저를 할부인도하였다. 그러나 스위스 매수인은 잔여 2회 분할인도분에 대하여는 그 인도의 시기가 지연 되었으며 품질도 불일치하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였다.

스위스 법원은 후속 할부분에 대한 인도일자를 확정하지 아니한 계약에서 매도인이 제1회 할부분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후 2주 이내에 후속 할부분을 인도한 것은 인도의 지연이 아니므로 잔여할부분의 대금지급(이자지급 포함)을 명령하였다.

이와 같이 인도일자 불확정계약에서 매수인이 임의로 인도 지연일자를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설혹 인도가 지연된 경우라 할지라도 인도 지연 그 자체가 대금지급거절의 사유가 되는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인도를 위한 추가기간을 설정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초과인도분의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수량이 계약수량보다 초과한 경우 매수인은 그 초

26) Switzerland : Tribunal Cantonal Valais, CI 97 167, 28 October 1997 : A/CN.9/SER.C/ABSTRACTS/17, 11 May 1998, Case 219.

과인도분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프랑스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겠다²⁷⁾. 프랑스 최고재판소는 프랑스의 매수인이 후지쓰가 초과물품을 인도하여 계약위반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한 상고심에서 매수인은 초과된 물품을 즉시 반환하거나 초과인도분의 보관비용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경우, 이는 물품의 수령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은 본 법제52조에 의거 계약상의 동일 비율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매도인이 초과수량을 인도한 그 자체가 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초과된 수량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 불지급 권리는 없으며, 초과수량의 거절을 통지하고 그 수량을 반환하거나 수령한 초과수량에 대하여 계약상의 비율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 조기인도된 물품의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조기인도된 물품의 대금지급을 매수인이 거절할 수 있는지 러시아 국제상사 중재법정의 판정을 통하여 살펴보겠다. 스위스의 매도인(원고)는 러시아의 매수인(피고)과 초콜렛과자의 분할인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²⁸⁾. 첫 2회 분할인도분은 매도인으로부터 은행보증장 수령한 후 3일 이내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물품은 x-mas에 대비 은행보증장 발송 후 7일 이내에 인도하도록 약정하였다. 매도인은 1993년 11월 중순 첫 2회 분할인도분을 인도하였고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하고 통관도 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도인이 은행보증장을 발송하기 이전에 매도인이 물품을 송부한 것은 매도인의 중대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다. 매수인은 국내 경제적 사정변화로 국내고객이 물품인수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에 매도인은 중재법정에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러시아 국제상사 중재법정은 매도인의 조기물품인도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였으므로 대금지급 거절의 사유가

27) France : Court of Cassation (1st Civil Division), 4 January 1995 : A/CN.9/SER.C/ABSTRACTS/11, 2 December 1996, Case 155.

28) Russian Federation : Tribu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t the Russian Federati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rbitral award in case No. 200/1994 of 25 April 1995 : A/CN.9/SER.C/ABSTRACTS/10, 16 August 1996, Case 141.

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와 같이 매도인이 물품을 조기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그 물품에 대한 인수 거절의 권리(본 법 제52조 1항)가 있지만 수령하였다면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10) 물품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물품불일치를 이유로 당해 물품을 재매각한 후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스위스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겠다²⁹⁾. 이태리의 매도인(가구 도매업자)은 스위스의 매수인(가구 소매업자)에게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스위스 매수인은 가구의 품질에 하자가 있어 일부 물품을 재매각하였고, 잔여 물품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하자보완을 거절하였다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스위스법원은 매수인이 재매각에 관하여 이태리의 매수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재매각하여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할 권리(본 법 제39조)를 상실하였다며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수령한 물품의 품질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그 불일치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품을 재매각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재매각 대금과 매매계약상의 물품대금과의 차액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신용장관련 위반 사례

(1) 신용장개설에 실패하고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신용장개설에 실패하고 대금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상사 중재법정의 판정을 통하여 살펴보겠다³⁰⁾. 이태리의 거품제어반 생산기계 수출업자인 매도인(원고)은 핀란드의

29) Switzerland, Canton of Ticino : Pretore della giurisdizione 야 Locarno Campagna, 27 April 1992 : A/CN.9/SER.C/ABSTRACTS/4, 19 August 1994, Case 56.

30)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 7585, Arbitral Award issued in 1992 : A/CN.9/SER.C/ABSTRACTS/27, 9 February 2000, Case 301.

매수인(피고)에게 신용장개설에 실패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및 이자지급을 중재에 회부하였다. 동 중재법정은 매수인이 지정된 일자에 신용장을 개설, 통지하는데 실패한 후에도 매도인은 계약해제선언에 앞서 추가기간을 설정하여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등 수개월간 기다려온 점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의 계약해제선언은 정당하며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원계약금액과 대체거래와의 차액 및 이자, 보상수수료(계약서상의 벌금조항) 등을 매도인에게 지급토록 판정하였다. 중재법정은 매수인의 어느 정도의 대금지급 지체 그 자체가 항상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매수인의 신용장개설실패 즉, 대금지급조치의무의 위반 그 자체는 중대한 계약위반이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기간 설정후에도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며 따라서 매도인에게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2) 추가기간 설정후에도 신용장개설에 실패한 경우

매도인이 추가기간을 설정한 후에도 매수인이 신용장개설에 실패한 경우 당해 계약은 해제되는지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상사 중재법정의 판정을 통하여 살펴보겠다³¹⁾. 불가리아의 매수인은 오스트리아의 매도인에게 계약서상에 합의된 기간내에 대금을 지급하는데 실패하였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취소불능 양도가능신용장을 개설해주도록 약정되었으나 매도인이 설정한 추가기간에도 그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실패하였고,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대금과 이자의 지급을 청구토록 중재에 회부하였다. 동 중재법정은 매수인이 물품대금과 이자를 매도인에게 지급토록 판정하였다.

이와 같이 추가기간 설정후에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매수인의 중대한 계약위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매수인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하였다고 하여 매도인은 당해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필요는 없다. 만일 위의 사례에서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선언하였더라도 인정될 것이나,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인도한 물품을 반환받고 손해배상금의 지급 청구해야 하는 등 번거로워질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은 매

31)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Arbitral award published in 1993, case No. 7197 : A/CN.9/SER.C/ABSTRACTS/8, 21 December 1995, Case 104.

수인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하였더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이행을 명령하는 특정이행 청구소송이 더욱 유용할 수 있다.

(3) 매도인의 기재사항 불통지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에 실패한 경우

매도인이 신용장 개설신청서상의 필수항목을 불통지하여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되는지 오스트리아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겠다³²⁾. 독일의 매수인(원고)은 오스트리아의 매도인(피고)과 프로 판가스를 FOB조건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은 대금지급의 수단으로 신용장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매수인은 신용장개설을 신청하였으나, 매도인이 선적항을 통지해주지 아니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실패하였다.

스위스법원은 매수인의 신용장 개설은 본 법 제54조에 의한 대금지급 조치의무이긴 하지만 그러한 실패의 원인은 매도인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공해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매수인의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매수인이 blank L/C를 구득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신용장개설 실패도 그 원인이 매도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면 매수인의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4) 신용장 유효기일 경과 후 서류보완을 한 경우

매수인이 개설 의뢰하여 개설된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후 매도인이 서류를 보완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 것인지 헝가리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겠다³³⁾. 독일의 매도인(원고)은 2명의 헝가리의 매수인에게 목재용 증고기계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 중 1명은 대금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을 수익자로 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이 대금지급을 요구하자 개설은행은 서류에 몇 가지 하자가 있어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매도인은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경과된 후 서류를 보완하여 제시하였으나 역시 대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헝가리법원은 매수인에게 증고 목재용기계 대금을 지급토록 판결하였다.

32) Austria : Supreme Court ; 10 Ob 518/95, 2 February 1995 : A/CN.9/SER.C-/ABSTRACTS/13, 23 October 1997, Case 176.

33) Hungary : Metropolitan Court (No. 12. G. 75.715/1996/20, 1 July 1997 : A/CN.9-/SER.C/ABSTRACTS/13, 23 October 1997, Case 172.

이와 같이 매도인이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한 서류를 제시하였다고 하여 또는 신용장의 유효기일내 하자 있는 서류를 제시하였다 하여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5) 선지급금 지급 후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선지급금을 지급한 후에도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해제되는지 스위스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오스트리아의 매수인(원고)은 리히텐슈타인에 본사를 두고 스위스에 지사를 두고 있는 매도인과 알콜성음료를 러시아로 운송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³⁴⁾. 그러나 운송방식과 운송최종일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그 계약은 이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스위스 매수인은 선지급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반면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 소송은 리히텐슈타인이 계약국은 아니지만 스위스 지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본 법이 적용되었다.

스위스법원은 매도인이 신용장개설을 위한 추기가간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해제를 선언한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당해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본 법 제81조 2항에 의거 양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지급금을 반환(이자 포함)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도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선지급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장개설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되는 것이다.

3. 물품수령의무의 위반 사례

(1) 변경된 인도일에 물품수령을 거절한 경우

인도시기의 변경에 합의를 하고 난 후 당초의 인도일에 물품인도를 요구하며 변경된 인도일에 물품수령을 거절한 경우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구성되는지

34) Switzerland : Bezirksgericht der Saane (Zivilgericht) ; T 171/95, 20 February 1997 : A/CN.9/SER.C/ABSTRACTS/25, 1 November 1999, Case 261.

프랑스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겠다³⁵⁾. 프랑스의 매수인은 스페인의 매도인에게 순 오렌지주스 86,000리터를 1996년 5월에서 12월까지 수 회에 걸쳐 할부인도토록 주문하였다. 그 후 9월 인도분을 8월 하순에 인도하는데 양당사자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8월 하순 물품의 인도시 매수인은 그 물품의 수량을 거절하였고 9월에 그 인도분을 인도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9월 인도요구를 거절하였고 매수인은 다른 매도인으로부터 더 높은 가격으로 오렌지주스를 구입하였다. 매수인은 8월 하순 인도분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스페인의 매도인은 로마상사법원에 매수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토록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에 대한 1심법원과 항소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1심법원에서는 매수인이 수량을 거절(8월분)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대금(8월분)을 지급토록 명령하였다. 또한 매도인의 계약해지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에서는 매수인이 8월 하순 인도분의 수량을 거절한 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은 아니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수령을 위한 추가기간을 설정해주었어야 했다고 판시하였다. 즉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해제는 잘못된 계약해제의 선언이라는 것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법 제74조에 의거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매수인의 물품수령 지체 그 자체는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매도인은 물품수령을 위한 추가기간을 설정한 후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본다. 하지만 논자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의문이 든다. 본 사례에서 매수인은 물품수령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8월분 물품의 수량을 거절선언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즉 매수인의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반한 매도인의 정당한 계약해제의 선언이므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매수인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다.

(2) 포장 상위를 이유로 잔여분 수량을 거절한 경우

포장 상위를 이유로 물품수령을 거절한 사례를 독일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겠다³⁶⁾. 독일의 매수인(피고)은 이태리의 매도인(원고)에게 포장 베이컨

35) France : Court of Appeal of Grenoble ; RG 98/02700, 4 February 1999, SARL Ego Fruits v. La Verja : A/CN.9/SER.C/ABSTRACTS/23, 6 July 1999, Case 243.

36) Germany : Oberlandesgericht Hamm ; 19U 97/91, 22 September 1992 : A/CN.9-/SER.C/ABSTRACTS/20, 22 February 1999, Case 227.

10짐짜를 청약하였다. 매도인은 포장베이컨 대신에 비포장베이컨으로 변경하여 회신하였다. 매수인은 그의 회신에서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4짐짜이 인도된 후 비포장베이컨이 구매가격 및 시장가격보다도 훨씬 싸다는 이유로, 잔여 6짐짜의 추가 인도분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매수인에게 제기하였다.

독일법원은 매도인이 비포장베이컨이라고 변경한 회신은 대응청약에 해당하지만 매수인의 회신에서 이를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된 것이며, 따라서 잔여분의 수령을 거절한 것은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므로 매수인에게 대금지급 및 그 이자를 배상토록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매대당사자는 청약서 및 대응청약상의 어느 한 조건이라도 세밀히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일단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양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구속되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계약 불성립을 이유로 물품수령을 거절한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품수령을 거절한 사례를 스위스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겠다³⁷⁾. 독일의 매도인(원고)은 스위스의 매수인(피고)이 주문한 식탁용 철제품을 제조하여 인도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과 매도인이 매수인의 독점판매권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제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스위스법원은 비록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가령, 구매가격)이 당사자간에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특정한 식탁용 철제품을 주문하였고, 또한 그 인도시기에 관해서도 매도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본 주문(청약)은 충분히 확정적이다. 따라서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시하면서 매수인의 독점적 판매권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며 매수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이 매수인의 물품수령거절의 사유에는 계약불성립 즉,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물품수령의 무 및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37) Switzerland : Handelsgericht des Kantons Aargau, OR. 96.00013, 26 September 1997 : A/CN.9/SER.C/ABSTRACTS/17, 11 May 1998, Case 217.

(4) 일부 물품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물품을 분할하여 수령토록 약정한 매매에서 매수인이 일부만 수령하고 일부 물품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지 오스트리아 중재법정의 판정을 통하여 살펴 보겠다³⁸⁾. 오스트리아의 매도인(원고)은 독일의 매수인(피고)과 FOB 함부르크 조건으로 금속판을 늦어도 1991년 3월까지 인도토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³⁹⁾. 그 후 매도인은 매수인이 분할하여 물품을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매수인은 일부 물품은 수령하여 재판매를 한 후 일부 물품의 대금과 보관비용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잔여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을 수령하지도, 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잔여 물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각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계약조항에 의거 오스트리아 중재법정에 잔여대금지급을 청구하였다.

중재법정은 매도인이 대금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매도인은 본 법 제77조에 의거 매수인의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재판매각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중재인은 계약대금과 대체거래와의 차액 및 이자에 대한 매도인의 대금지급 청구권리를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매수인은 자신에게는 필요한 물품이지만 물품을 수령하지도,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기다리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물품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물품수령의무와 더불어 물품보존의무의 이행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수인이 물품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은 사례를 러시아 국제상사 중재법정의 판정을 통하여 살펴보겠다⁴⁰⁾. 러시아의 매수인(원고)은 슬로베니아의 매도인(피고)과 장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38) Austr : Internationales Schiedsgericht der Bundeskammer der gewerblichen Wirtschaft - Wien ; SCH-4366, 15 June 1994 : A/CN.9/SER.C/ABSTRACTS/7, 12 July 1995, Case 93.

39) 오스트리아 매도인의 물품이 독일의 창고에 보관중이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40) Russian Federation : Tribu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t the Russian, Federati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rbitral award in case NO. 164/1996, 17 November 1998 : A/CN.9/SER.C/ABSTRACTS/41, 25 July 2003, Case 471.

서 약정한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매수인은 그 장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 그 하자 있는 장비는 매도인측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리되었음에도 다시 고장을 일으키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장비의 대체품인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매도인에 의하여 거절되었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장비의 구입대금의 상환 및 그 장비의 수리를 위하여 반송한 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러시아 중재법정은 양당사자가 부품의 하자 발생시 매도인의 비용으로 부품을 교환해주도록 부속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수리 후 장비가 6개월내에 고장을 일으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새 장비를 설치해줌은 물론 그 고장 장비의 반송비용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매수인은 본 법 제86조에 따른 그 고장난 장비의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매수인은 그 고장난 장비를 이미 폐기 처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본 법 제82조에 의한 물품의 반환이 불가능하여 대체품인도 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중재법정은 러시아 매수인이 제기한 장비구입대금의 상환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그로 인하여 추가 발생한 관세의 회복은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매수인은 물품수령의무 못지않게, 하자 있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을 보존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PSI후 물품수령을 거절한 경우

매수인이 선적전 검사를 한 후 그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독일 항소법원의 한 판례에서는 독일의 매수인이 터키의 매수인으로부터 오이를 선적하기 전 터키에서 7일간 선적전 검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수령 후 물품의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감액청구를 한 독일의 매수인에게 패소 판결을 하였다.⁴¹⁾

이와 같이 PSI를 행한 매수인이 물품수령 후 매도인에게 물품의 불일치를 이유로 권리구제를 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PSI후 물품의 불일치가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보완을 청구하였지만 여전히 중대한 계약위반에 상당하는 불일치가 존재한다면 계약을 해

41) Germany : Oberlandesgericht Düsseldorf, 17 U 82/93 ; 8 January 1993,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Case Law on UNCITRAL Texts (CLOUT), A/CN.9/SER.C/ ABSTRACTS /3, 24 May 1994, Case 48.

제할 수 있다. 프랑스의 한 판례에서는 프랑스의 매수인이 이태리의 매도인으로부터 하이테크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사전에 매도인의 구내에서 PSI한 후 그 하자보완을 청구하였지만 인도된 물품이 여전히 중대한 계약위반에 상당하여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⁴²⁾

IV. 결언

매수인의 계약위반의 유형은 대금지급의무의 위반과 물품수령의무의 위반으로 대별된다. 대금지급의무의 위반에는 대금지급의 지체, 거절 및 대금지급조치의무 등이 포함된다. 신용장과 관련된 의무의 위반은 대체로 대금지급조치의무의 위반에 속한다. 물품수령의무의 위반에는 물품수령의 지체 및 거절 등이 주종을 이루지만 PSI후 물품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매수인의 위반은 그의 주 의무의 위반이다.

그러나 사례를 분석해보면, 비록 매도인의 위반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매수인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물품보존의무의 위반, 불일치 통지의무의 위반, 계약해제 선언시기의 위반 및 물품검사의 의무의 위반 등이 그것이다. 매수인은 주 의무뿐만 아니라 부수적 의무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매도인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대체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지체, 대금지급 조치의무의 지체 및 물품수령의무의 지체 등 매수인이 그의 주 의무 이행을 지체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매도인에게 계약해제의 권리를 부여해주는 상황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추가기간을 설정하여 최고통지를 한 후 계약을 해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매수인이 자신의 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그의 권리구제를 법원에 신청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때 상당수의 매수인은 계약이 없었다고 즉,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를 다수 볼 수 있었다. 매

42) France : Court of Appeal of Versailles, 29 January 1988 ; Giustina International (SpA) v. Perfect Circle Europe (SAR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Case Law on UNCITRAL Texts (CLOUT), A/CN.9/SER.C/ABSTRACTS/19, 4 November 1998, Case 225.

수인이든 매도인이든 국제물품매매를 행하는 당사자는 본 법상의 물품매매편(제3편)과 계약성립편(제2편)을 숙지하고 거래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상인)도 2005년 3월부터 다른 체약국 상인과의 물품매매에는 동 법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므로 특히 그러하다.

정부의 주무부서에서는 본 법의 내용에 관한 안내서를 배포하거나 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상거래 관계자에게 본 법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오원석·하강현, 국제물품매매법, 박영사, 2004.
- 하강현, 「근본적 계약위반 조항의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매도인의 의무위반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19권(2003.2).
- Enderlein, Fritz & Maskow, Dietrich, *International Sales Law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ceana Publications, 1992.
- Hellner, J. "The Vienna Convention and Standard Form Contracts",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arcevic P. Volken P. New Oceana, 1986.
- Kritzer, A.H.,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4.
- Honnold, J.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2nd Edition, Kluwer Law & Taxation Publishers.
- Austria : Internationales Schiedsgericht der Bundeskammer der gewerblichen Wirtschaft - Wien ; SCH-4366, 15 June 1994 : A/CN.9/SER.C/ABSTRACTS/7, 12 July 1995, Case 93.
- Austria : Oberster Gerichtshof, 1 Ob 292/99v, 28 April 2000 : A/CN.9/SER.C/ABSTRACTS/37, 27 May 2003, Case 427.
- Austria : Supreme Court ; 10 Ob 518/95, 2 February 1995 : A/CN.9/SER.C/ABSTRACTS/13, 23 October 1997, Case 176.
- France : Court of Cassation (1st Civil Division), 4 January 1995 : A/CN.9/SER.C/ABSTRACTS/11, 2 December 1996, Case 155.
- France : Court of Appeal of Grenoble ; RG 98/02700, 4 February 1999, SARL Ego Fruits v. La Verja : A/CN.9/SER.C/ABSTRACTS/23, 6 July 1999, Case 243.
- France : Court of Appeal of Versailles, 29 January 1988 ; Giustina International (SpA) v. Perfect Circle Europe (SAR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Case Law on UNCITRAL Texts (CLOUT), A/CN.9/SER.C/ABSTRACTS/19, 4 November 1998, Case 225.

- Germany : Amtsgericht Duisburg ; 49 C 501/00, 13 April 2000 :
A/CN.9/SER.C/ABSTRACTS/33, 19 December 2000, Case 360.
- Germany : Oberlandesgericht Jena ; 8 U 1667/97 (266), 26 May 1998 :
A/CN.9/SER.C/ABSTRACTS/26, 3 December 1999, Case 280.
- Germany : Oberlandesgericht München ; 7 U 2070/97, 9 July 1997 :
A/CN.9/SER.C/ABSTRACTS/26, 3 December 1999, Case 273.
- Germany : Oberlandesgericht Hamm ; 19U 97/91, 22 September 1992 :
A/CN.9/SER.C/ABSTRACTS/20, 22 February 1999, Case 227.
- Germany : Oberlandesgericht Düsseldorf, 17 U 82/93 ; 8 January 1993,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Case Law
on UNCITRAL Texts (CLOUT), A/CN.9/SER.C/ ABSTRACTS /3, 24
May 1994, Case 48.
- Hungary : Metropolitan Court (No. 12. G. 75.715/1996/20, 1 July 1997 :
A/CN.9/SER.C/ABSTRACTS/13, 23 October 1997, Case 172.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
7585, Arbitral Award issued in 1992 : A/CN.9/SER.C/ABSTRACTS-
/27, 9 February 2000, Case 301.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Arbitral award published in 1993, case No. 7197 : A/CN.9/SER.C/-
ABSTRACTS/8, 21 December 1995, Case 104.
- Russian Federation : Tribu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t the
Russian, Federati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rbitral
award in case N0. 164/1996, 17 November 1998 : A/CN.9/SER.C-
/ABSTRACTS/41, 25 July 2003, Case 471.
- Russian Federation : Tribu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t the
Russian Federati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rbitral
award in case No. 200/1994 of 25 April 1995 : A/CN.9/SER.C/-
ABSTRACTS/10, 16 August 1996, Case 141.
- Switzerland : Tribunal Cantonal Valais, CI 97 167, 28 October 1997 :
A/CN.9/SER.C/ABSTRACTS/17, 11 May 1998, Case 219.
- Switzerland, Canton of Ticino : Pretore della giurisdizione di Locarno
Campagna, 27 April 1992 : A/CN.9/SER.C/ABSTRACTS/4, 19
August 1994, Case 56.
- Switzerland : Bezirksgericht der Saane (Zivilgericht) ; T 171/95, 20 February

110 「貿易商務研究」第 26 卷 (2005. 5), 第 1 編 國際賣買

1997 : A/CN.9/SER.C/ABSTRACTS/25, 1 November 1999, Case 261.

Switzerland : Handelsgericht des Kantons Aargau, OR. 96.00013, 26
September 1997 : A/CN.9/SER.C/ABSTRACTS/17, 11 May 1998,
Case 217.

ABSTRACT

A Study on the Cases of Buyer's Breach

Ha, Kang Hun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under the contract and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of contract.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cludes taking such steps and such formalities under the contract.

The remedial system of the rights of the seller is easier than that of the buyer, for the obligations of the former are less complicated.

The seller has the right to avoid a contract provided two conditions are fulfilled : (a) the buyer must have committed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b) the additional period for performance set by the seller in the case of non-performance must have expired.

A decision is more difficult to take in the case of a delay where there is no fixed-term contract, to clarify the situation the seller may set a Nachfrist.

It is essential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in Korea should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CISG.

Key Words : Breach of the Contract, Taking delivery of the Goods, Payment of the Price, Declaration of Avoidance.
--